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7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이개호
이성윤 · 주철현 · 문정복
소병훈 · 조승래 · 안도걸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합니

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로 한다.

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2조의3(공정배상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2. 제42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
3. 제4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29조, 제429조의2 또는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42조의4(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2조의5(기금의 회계기관 등)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

배”로, “6배”를 “10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를 “10배”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
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략)

② ~ ⑦ (생략)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③ ~ ⑧ (생략)

<신설>

-----청구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0년-----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42조의3(공정배상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
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2. 제42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
3. 제4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29조, 제429조의2 또는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한

<신 설>

<신 설>

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42조의4(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
· 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
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
회에 공정배상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42조의5(기금의 회계기관 등)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u>4배</u> 이상 <u>6배</u>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u>6배</u>에 해당하는 금액이 <u>5억원</u>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u>5억원</u>으로 한다. 1. ~ 10. (생략) ② . ③ (생략)	<u>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u> 제443조(벌칙) ① ----- -----<u>2년</u> ----- ----- -----<u>5배</u>-----<u>10배</u>----- ----- ----- ----- ----- -----<u>10배</u>----- -----<u>10억원</u>----- -----<u>10억원</u>으로-----.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